

『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옛 전통나루를 현대적으로 재현하여 낙동강 관광을 상징하는 핵심콘텐츠로 개발하고, “쉼의 공간(休), 즐길의 공간(樂), 교류와 소통의 공간(痛)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레저스포츠 체험공간을(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) 조성 하고자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1) 건 물

- 면 적 : 3동 900㎡(체험관, 주막촌, 보부상 및 사공 숙소)
- 예정가격 : 2,990,000천원(공사금액 기준)

2) 기타(나루터) : 2개소 400,000천원(공사금액 기준)

- 비산나루 (비산동 산호대교 인근)
- 동락나루 (임수동 구미대교 인근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변경 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건물과 기타 재산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

○ 주요 내용은

-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동락나루 부근에 체험관, 주막촌, 보부상 및 사공 숙소 등 3개동 900m²와 비산나루, 동락나루를 신축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- 제162회 임시회시 보류된 건으로 당초 비산, 양호, 동락 나루터 3개소이던 것을 비산, 동락 나루터(구미대교 인근) 2개소로 축소 변경하고, 나루터와 주막촌 등 관련건물을 신축하여 낙동강 관광을 상징하는 핵심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
- 향후 낙동강 시대의 관광산업 선점을 위해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취득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.